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3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장

## 1. 제안이유

자치경찰제 시행, 한시기구 기간만료일 도래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며, 소관사무를 규정함 (안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).

나.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(안 부칙 제6859호).

1) 지역발전본부 : ~ '21. 6. 30. → ~ '21. 12. 31.

2) 문화시설추진단 : ~ '21. 8. 18. → ~ '22. 8. 18.

다.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라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함(안 별표 1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, 제9조, 제11조의2, 제21조

3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27조

4)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의2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3. 5.~3. 9.)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제4절(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

제131조(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32조(소관사무)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
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, 예산, 장비,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
3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
4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, 제도, 정책, 관행 등의 개선
5.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
6.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서울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

의 협의,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

7.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

8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

9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

10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

11.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·사고 및 현안의 점검

1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
1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·조정

14.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·명령에 관한 사무

15. 국가경찰사무·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

16.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·조정 요청

17. 그 밖에 시장,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

제133조(사무국) ① 경찰법 제27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 1의 구로소방서의 관할구역란 중 “및 금천구 일원”을 “일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의 구로소방서란 다음에 금천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금천소방서	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-8번지	금천구 일원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조례 제68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 
“2021년 6월 30일” 및 “2021년 8월 18일”을 각각 “2021년 12월 31일” 및 “20  
22년 8월 18일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u>&lt;신   설&gt;</u>	<u>제4절 서울특별시</u> <u>자치경찰위원회</u>
<u>&lt;신   설&gt;</u>	<u>제131조(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</u> <u>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</u> <u>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경찰</u> <u>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</u> <u>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자치</u> <u>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</u> <u>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u> <u>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</u> <u>과 상임위원을 둔다.</u> <u>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</u> <u>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</u> <u>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</u> <u>한다.</u>
<u>&lt;신   설&gt;</u>	<u>제132조(소관사무) 자치경찰위원</u> <u>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 <u>1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</u> <u>수립 및 평가</u> <u>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,</u> <u>예산, 장비, 통신 등에 관한 주</u> <u>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</u> <u>3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</u> <u>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</u> <u>영</u>

현 행	개 정 안
	<p>4. <u>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, 제도, 정책, 관행 등의 개선</u></p> <p>5. <u>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</u></p> <p>6. <u>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서울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, 제30조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</u></p> <p>7. <u>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 의뢰</u></p> <p>8. <u>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</u></p> <p>9. <u>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</u></p> <p>10. <u>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</u></p> <p>11. <u>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·사고 및 현안의 점검</u></p> <p>12. <u>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</u></p> <p>13. <u>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·조정</u></p> <p>14. <u>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·명령에 관한 사무</u></p> <p>15. <u>국가경찰사무·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</u></p> <p>16. <u>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·조정 요청</u></p> <p>17. <u>그 밖에 시장,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</u></p> <p><u>제133조(사무국) ① 경찰법 제27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.</u></p> <p><u>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u></p> <p><u>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 1] 소방서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(제37조제2항 관련)			[별표 1] 소방서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(제37조제2항 관련)		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	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		
구로소방서	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(고척동)	구로구 및 금천구 일원	구로소방서	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(고척동)	구로구 일원
<신 설>			금천소방서	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-8번지	금천구 일원
부칙 <제6859호, 2018. 5. 3.>			부칙 <제6859호, 2018. 5. 3.>		
제1조(시행일) (생 략)			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		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 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.			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--- ----- 2021년 12월 31일----- ----- 2022년 8월 18일-----.		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 일부는 행정기구 신설에 관한 것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며,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.

## 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철묵(02-2133-6732)